

[별지 제44호서식] (규칙 제76조제1항 관련) <개정 2015.8.13.>

## ○ ○ 선 거 투 표 안 내 문

투표시간	월 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 투표하러 갈 때 자신의 등재번호를 오려 가면 빨리 투표 할 수 있습니다.

### ◀ 선거인명부 등재내역 ▶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선거인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선거인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선거인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선거인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선거인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선거인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선거인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귀하

주소

우편번호

- 주 : 1. 이 서식은 게재사항과 게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체의 규격이나 선거인명부 등재내역란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2. 투표안내문 발송용봉투를 일부가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 투표안내문에 세대주의 주소·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3. 투표절차 그 밖의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앞면 또는 뒷면에 적되, 이를 투표안내문발송용봉투에 적은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4.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시간”란 중 “오후 6시까지”를 “오후 8시까지”로 고쳐서 기재한다.  
 5. 점자형투표안내문은 투표장소와 선거인명부 등재내역을 생략할 수 있다.